#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 치계약에 관한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## 2015년 9월 일

#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(허가)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
-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법명의 개정
-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서식 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○『장애인복지법』제38조를 제42조로함. (안 제1조)
- 『모·부자복지법』제15조를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15조로 함.(안 제1조)
- 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제16조를 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 제16조의2로 함.(안 제1조)
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68조의2,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』 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.
-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지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 월일로 개정. (안 제4조 별지1호서식)
- 제1조(목적)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(안 제5조 별표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,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정비

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 경궁로 17(예관동 120-1), 전화 : 02-3396-5372, FAX : 02-3396-8734,

E-mail: freshkks@jungqu.seoul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(☎02-3396-537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·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·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·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"를 "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제25조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15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, 한부모가정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중구"를 "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중구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신문 판매대 등"을 "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"신문 판매대 등"이라 한다)"로 하고, "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"를 "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"하며, "한한다."를 "한정한다."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조에 따른"으로 하고, "게시판,구정소식지,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"를 "게시판, 구정 소식지, 구보 등의 방법으로"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"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산청"을 "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"으로 하고, "장애인 등"을 "장애인 및 노인, 한부모가정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(이하 "장애인 등"이라 한다)"로 한다. 제6조 본문 중 "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"방법에 관하여는 당해"를 "방법은 해당"으로 하고, "규정에 의한다."를 "규정에 따른다."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"각 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 제9조 본문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한다.

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.

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㎡이하)									
□시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(위탁계약) 신청서									
			실지허가 ( 	위탁시	약) 신성서				
신	성 명		생년월일			· 전	<sup>]</sup> 화번호		
	주 소						세대원수 신청인 포함)		
청 인		□장애인 □한부모가족 신청구분 □노인 □북한이탈주민 -란에√표시) 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□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		1	}애등급  임인경우)			
	수 급 대상 <sup>호</sup> (해당란에-		삼(생계급여, ♀ 삼자가 아님	료급	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				
	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㎡이하) □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(위탁계약)를(을) 신청합니다.								
			년	월	일				
서	신청인 서명 또는 (인)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								
접:	수번호	제 호							
	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
	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(인)								
첨부	서류 :국		첩 등(기타 우 에서 확인)	·선계약	자대상자임을	증명할	수 있는	서류는	=-

[별표]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

순위	장 애 인	노인	한부모기족	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1,2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
2	장애등급이 3,4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 자를 제외한 자	수급자, 의료급여수급
3	장애등급이 5,6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	

# 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

- 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- 2.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
- 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- 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

# 신 · 구문 대조표

#### 혅 행 개 정 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 의신문·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|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 매점 및 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

###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 조, 노인복지법 제25조,모·부 자복지법 제15조,독립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(이하"중구"라 한다)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 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(이하 " 신문판매대등"이라 한다)를 설 치 ·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(장애 인복지법제2조에서규정한 자)및 65세 이상노인인 생활보호대상 자,모 •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, 순국선열유족(이하"장애인 등" 이라 한다)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

###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4 2조, 「노인복지법」제25조, 「한부모가족<u>지원법」제15조,</u>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」제16조의2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 8조의2 및「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| 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 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를 설치·계약할 때에는 장 애인 및 노인, 한부모가정, 독 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이 우 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
 현 행	개 정 안
<u>고</u> 경	
	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의 범위) ①이 조례의	제2조(적용의 범위) ①
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<u>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</u>	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중구
	"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의 청
	<u>사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	②
사내에 <u>신문판매대 등을</u> 설치할	<u>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</u>
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	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"
외하고는 이 <u>조례가 정하는 바</u>	신문 판매대 등"이라 한다)를 -
<u>에 의한다</u> . 다만, 매점의 경우	-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에는 그 규모가 10㎡이하인 시	<u> </u>
설에 <u>한한다</u> .	<u>한정한다</u> .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중구	제3조(사전공고)
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	
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은 <u>제2조</u>	<u>제2조</u>
<u>의 규정에 의한</u> 공공용의 청사	<u>에 따른</u>
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	
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<u>게시</u>	게시
판,구정소식지,구보게제 등의	판, 구정 소식지, 구보 등의 방
<u>방법에 의하여</u> 사전 공고하여야	법으로

현 행	개 정 안
한다.	
제5조(우선계약) 구청장 또는 그	제5조(우선계약)
소속기관의 장이 <u>제4조의 규정</u>	제4조에 따른 계
<u>에 의한 계약산청</u> 을 받은 때에	약 신청
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	
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	<u>장애인 및 노</u>
<u>장애인 등</u> 2인 이상이 신청한 경	인, 한부모가정, 독립유공자・
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
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	족, 북한이탈주민(이하 "장애인
기관의 장이 정한다.	<u>등"이라 한다)</u>
	<del></del> .
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<u>제5조의</u>	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<u>제5조에</u>
<u>규정에 의하여</u> 계약을 체결한	<u> 따라</u>
자는 <u>신문판매대</u> 등을 직접 관리	
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	
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	
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	
가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	
<u>며,</u>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	
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다	
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	
수 없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)	제7조(사용료) 설치에 따른 시설
방법에	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<u>방법은</u>
<u> 관하여는 당해</u> 규정에	<u>해당규정에</u>
의한다.	<u> 따른다.</u>
제8조(계약의 해지) <u>각 호의</u>	제8조(계약의 해지) <u>각 호의</u>
<u>1</u>	<u> 어느 하나에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) -	제9조(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) - 
1회에 한하여	<u>한 차례만</u>
	<del></del> .

현 행	개 정 안
[별지 제1호 서식]	[별지 1호 서식]
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m'이하) □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서 키 된 기 (이타 게이) 시 된 1	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㎡이하) □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(위탁계약) 신청서
설치허가 (위탁계약)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	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
선 주 소 (A) 전	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
' ' '   (신청인 포함)     선청구분 □장애인 □모자가정의여성   장애등급     (해당란에√표시) □65세이상 노인 □순국선열가족 (장애인인경우)     생활보호 □거택보호 세대원중   대상여부 □자활보호 장애인	신
에 하다 다시필요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에 된 이 된 에 된 에	다 급 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
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㎡이하) □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(위탁계약)를(을) 신청합니다.	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□신문·복권판매대 □매점(10㎡이하) □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(위탁계약)를(을) 신청합니다.
ਪ ਦ ਦ	선 결 일
신청인 서명 또는 (인)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	신청인 서명 또는 (인)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
접수번호   제 호  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점수번호   제 호  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(인) 첨부서류 : 국가유공자 수첩 등(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)	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(인) 첨부서류 : 국가유공자 수첩 등(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)

## 현 행 개 정 안

#### [별표]

판매대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때의 우선순위

순	장 애 인	65세 이상	모자 가정의	순국선열유
위		노인	여성	족
1	장애인등급 1~2급으로 생활보호	거택보호	거택보호	거택보호
	대상자	대상자	대상자	대상자
2	장애인등급 3~4급으로 생활보호	자활보호	자활보호	자활보호
	대상자	대상자	대상자	대상자
3	장애인등급 5~6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			

- 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
- 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- 2.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
- 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- 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

#### [별표]

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

순 위	장 애 인	노인	한부모가족	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1,2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
2	장애등급이 3,4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법」에 따른 생계급여	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를 제외한 자
3	장애등급이 5,6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	

- ※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
- 1.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
- 2.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
- 3. 세대원수가 많은 자
- 4.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

#### ■ 『장애인복지법』

제42조(생업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■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

제15조(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#### 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의2』

제16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#### 📕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』

제68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####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』

제47조의6(생업지원)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장애인
- 2.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- 3.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- 4.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